

행정안전부령

지 방 자 치 단 체 업 무 추 진 비 집 행 에 관 한 규 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 출 일 자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업무추진비 집행기준·범위 구체화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제 업무추진 집행 여건을 반영하여 규정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집행사유 구체화(안 별표 1 제7호, 별표 2 제7호)

- 소속 현장 근무자(청사방호원, 운전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은 노고로 인한 격려가 필요한 경우에 집행하도록 구체화하고, 격려금품 지급 시에도 주기적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명문화

나. 자치단체 방문 집행 대상기관 명확화(안 별표 1 제2호, 별표 2 제2호)

- 벤치마킹·견학 등을 위해 당해 자치단체 관할 구역 외에 소재한 공공단체, 민간단체 등이 방문할 경우에만 집행(기념품 등) 명문화

* 국가기관, 해외기관이 방문할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집행 가능

다. 시책사업 홍보 관련 집행 대상자 확대(안 별표 1 제4호, 별표 2 제4호)

- 자치단체가 시책사업 홍보를 위해 인플루언서(블로거, 유튜버 등)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식사 제공이 가능토록 규정 개정

라. 선수와 동행한 임직원에 대한 격려(안 별표 1 제5호, 별표 2 제5호)

- 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와 동행한 임직원에게 격려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이 가능토록 규정 후단 신설

* 다만, 임직원은 직접 경기에 출전하지 않으므로 격려금(현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을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중 “다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로, “식사(다과·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식사”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종전의 나목) 중 “식사”를 “식사(다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4호, 제5호, 제2호, 제6호, 제7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라목을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가목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종전의 제2호) 가목(종전의 라목) 중 “언론관계자”를 “언론관계자 등과”로 한다.

별표 1 제5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학술·문화예술·체육 활동”을 “체육, 문화예술·학술, 자원봉사 활동”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종전의 가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선수와 동행한 임직원에게 격려품 지급 및 식사 제공 가능”
별표 1 제2호(종전의 제4호)가목 중 “추진을 완료한”을 “완료한”으로, “필요하여”를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공공단체, 민간단

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을 “해외기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외에 소재한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로 한다.

별표 1 제6호(종전의 제5호)가목 중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을 “소방서(119안전센터 등 포함)와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군부대,”로, “지급하는 격려금품”을 “격려금품 지급”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소방서(파출소”를 “소방서(119안전센터 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종전의 제6호)가목 중 “(사업소와 읍·면·동”을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으로, “이호”를 “이 호”로, “지급하는 위로금품”을 “위로금품 지급”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퇴직”을 “퇴직(예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격려금품 지급”을 “노고로 인한 격려가 필요한 경우 격려금품 지급(단, 주기적 지급 금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종전의 제7호)나목 중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을 “취임·퇴임 또는 전입·전출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의한 공공시설”로 한다.

별표 1 제8호나목3)나) 기호(-) 중 “사업소”를 “소속 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으로, 같은 기호(-) 중 “행정구”를 “자치구가 아닌 구”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을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중 “식사(다과·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식사”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종전의 나목) 중 “식사”를 “식사(다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별표 2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4호, 제5호, 제2호, 제6호, 제7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라목을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가목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중전의 제2호) 가목(중전의 라목) 중 “언론관계자”를 “언론 관계자 등과”로 한다.

별표 2 제5호(중전의 제3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선수와 동행한 임·직원에게 격려품 지급 및 식사 제공 가능”
별표 2 제2호(중전의 제4호) 나목 단서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 조제2항”을 “조례”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마목(중전의 바목) 중 “행사”를 “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 사목(중전의 아목) 중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을 “해외기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외에 소재한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로 한다.

별표 2 제6호(중전의 제5호)가목 중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을 “소방서(119안전센터 등 포함)와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군부대,”로, “지급하는 격려금품”을 “격려금품 지급”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소방서(파출소”를 “소방서(119안전센터 등”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중전의 제6호)가목 중 “상근직원(의회사무처·국·과”를

“소속 상근직원(의회사무기구”로, “유족에 대한”을 “유족에게”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퇴직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 포함)에 대한”을 “공로가 많은 퇴직(예정) 공무원에게”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마목, 바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중전의 바목) 중 “현장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을 “현장근무자에게 노고로 인한 격려가 필요한 경우 격려금품 지급(단, 주기적 지급 금지)”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자체계획과”를 “자체 계획과”로,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을 “따른 의례적인 선물 지급”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중전의 제7호)가목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해당 지방의회 제외)”로, “공동행사”를 “공동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퇴임·취임 또는 전·출입하는”을 “취임·퇴임 또는 전임·전출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의한 공공시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u>다른</u> 지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u>식사(다과·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u>식사</u> 제공 2. 시책 또는 지역 홍보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u>언론관계자</u>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u>식사</u> 제공 3. <u>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u>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별표 1]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나. <u>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u> -- ----- ----- -- <u>식사</u> ---- 가. ----- ----- ----- ----- ----- <u>식사(다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4. 시책 또는 지역 홍보 나. (현행 가목과 같음) 다. (현행 나목과 같음) 라. (현행 다목과 같음) 가. ----- ----- <u>언론관계</u> <u>자 등과</u> ----- ----- 5. <u>체육, 문화예술·학술, 자원봉사 활동</u>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 ----- -----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 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 간담회 · 행사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
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
(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

제공. 이 경우 선수와 동행
한 임직원에게 격려품 지급
및 식사 제공 가능

2.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 간담회 · 행사

가. _____
 _____ 완
 료한 _____

필요한 경우 -----

마. -----
 -- 해외기관 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 관할 구역 외에 소
재한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
회, 협회 -----

6.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소방서(119안전센터 등 포
합)와 경찰서(지구대 등 포

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사업소와 읍·면·동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품

- 나.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 라. 소속 상근직원 중 수로원, 청사방호원, 주·정차단속원, 불법광고물 단속원, 그린벨트 단속원, 하천감시원, 환경미화원, 병원선 및 불법어업감시선 근무자, 운전원 등 현

함), 군부대, -----

----- 격려금품

지급

- 다. -----

-- 소방서(119안전센터 등 -

7.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가. -----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 이 호

----- 위

로금품 지급

- 나. -----

--- 퇴직(예정) -----

- 라. -----

장 근무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게 기념품 지급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나. 축의·부의금품

3) 지급 명의자별 지급 대상자 구분

나) “가)” 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지방의회·사업소 소속 상근직원을 말하며, 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행정구를 포함한다)의 경우는 읍·면·

----- 노고로 인한 격려가 필요한 경우 격려금품 지급(단, 주기적 지급 금지)

3.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나. -----
----- 취임·퇴임 또는 전입·전출하는 -----

다. -----
-----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의한 공공시설-----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나. 축의·부의금품

3) 지급 명의자별 지급 대상자 구분

나) -----

- -----
----- 소속 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

----- (자치구가 아닌

동 직원을 포함한다]	구----- ----- -----
[별표 2]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u>식사(다과·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u>식사</u> 제공 2.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해당 지방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u>언론관계자</u>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u>식사</u> 제공 3.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	[별표 2]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나. ----- ----- ----- ----- -- <u>식사</u> ---- 가. ----- ----- ----- ----- ----- <u>식사(다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4.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나. (현행 가목과 같음) 다. (현행 나목과 같음) 라. (현행 다목과 같음) 가. ----- ----- <u>언론관계자</u> 등 <u>과</u> ----- ----- 5.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 -----

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나. 해당 지방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다. 해당 지방의회,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직무와 관련된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급

라. (생략)

마. (생략)

바.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제공.
이 경우 선수와 동행한 임직원에게 격려품 지급 및 식사 제공 가능

2.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나. -----

----- 조례에

<삭 제>

다. (현행 라목과 같음)

라. (현행 마목과 같음)

마. -----
----- 행사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

사. (생 략)

아. 다른 지방의회,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의회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다. 해당 지방의회 주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6. 소속 의원·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의회 의원 및 상근

바. (현행 사목과 같음)

사. -----
해외기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외에 소재한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

6.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소방서(119안전센터 등 포함)와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군부대, -----

----- 격려금품
지급

다. -----

----- 소
방서(119안전센터 등 ----

7. 소속 의원·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 소속

직원(의회사무처·국·과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로금품 지급

다.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퇴직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 포함)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라. (생략)

마. (생략)

바.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청사방호원,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현장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사.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상근직원(의회사무기구-----

----- 유족에게 -----

다. -----
----- 공로가 많은 퇴직(예정) 공무원에게 -----

마. (현행 라목과 같음)

바. (현행 마목과 같음)

라. -----
----- 현장근무자에게 노고로 인한 격려가 필요한 경우 격려금품 지급(단, 주기적 지급 금지)

사. -----
----- 자체 계획과 -----
----- 따른 의례적인 선물 지급

3.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 지방자치단체(해당 지방의회 제외), -----

---- 공동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u>퇴임·취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u>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및 식사 제공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u>공공시설의</u>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화분 제공	----- ----- 나. ----- ----- <u>취임·퇴임 또는 전입·전출하는</u> ----- ----- ----- 다. ----- -----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의한 <u>공공시설</u>----- -----
---	---